

## 감사규정 개정 요지

### 1. 개정이유

- 2015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현재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사례 및 반부패수범 사례를 시행하여 공사 청렴도 성과 평가에 기여
  - 우리공사도 국민권익위에서 선정한 모범사례를 사규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

### 2. 주요내용

- 감사인의 사적관계 사전고지 의무신설 (제10조제4항)

###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10 조 (감사인의 행동규범)①(생략) ② 감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사에서 배제한다. 1.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생략)	제 10 조 (감사인의 행동규범)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감사대상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인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사에게 당해 감사에 서의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